

의안번호	2208039
의 퇴 인	임미애 의원
회 답 일	2025. 3. 10.
추 계 번호	25B0756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한우 도축 및 출하장려금 지급, 한우의날 행사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5년간 총 739억 7,400만원(연평균 147억 9,500만원) 이상
- 1++ 및 1+등급 판정 한우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시나리오2) 5년간 총 631억 7,900만원(연평균 126억 3,600만원) 이상
- 1++등급 판정 한우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안 제6조)		450	450	450	450	450	2,250	450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8조)		344	—	54	55	56	509	102
도축·출하 장 려금 (안 제12조)	도축장려금	8,600	8,600	8,600	8,600	8,600	43,000	8,600
	[시나리오 1] 출하장려금 (1++ 및 1+ 등급 지급)	5,500	5,500	5,500	5,500	5,500	27,500	5,500
	[시나리오 2] 출하장려금 (1++ 등급 지 급)	3,341	3,341	3,341	3,341	3,341	16,705	3,341
한우의날 행사 및 홍보 (안 제29조)		143	143	143	143	143	715	143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15,037	14,693	14,747	14,748	14,749	73,974	14,795
	[시나리오 2]	12,878	12,534	12,588	12,589	12,590	63,179	12,636

주: 1) 도축장려금 지급단가는 한우 1마리당 10만원으로 가정(연간 명절 2회, 4만 3천두 물량)

2) 출하장려금 지급단가는 한우 1마리당 1++등급 15만원, 1+등급 10만원으로 가정

자료: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ekapepia.com)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7조(연구·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1. 한우의 품종육성 2. 유전체 분석에 의한 종모우 선발과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3. 한우의 사양·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4.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및 실용화 방안 5.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 함(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한우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 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사육·유통·소비 등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 리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 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한우산업 발전협의회)	한우산업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둔다(제1항)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의 규모 관리 3.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4.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5. 한우의 유통 및 수출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 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7	안 제10조(한우농 가의 탄소 저감 촉 진)	국가는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3. 저메탄 등 사료 지원 4. 한우의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의무규정
8	안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 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 가에 제공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시 한우 사육규모 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3 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지원 및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2	안 제1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함.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음(제6항)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16조(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함(제1항)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음(제3항)	
14	안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 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5	안 제18조(부산물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부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통과정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6	안 제19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의무규정
18	안 제21조(도축·가공시설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가공시설의 구축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9	안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0	안 제23조(수출기반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1.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21	안 제25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대 세대로 전달되도록 국가 단위의 한우 유전자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1항) 국가 차원에서 지속가능 유전자원 활용을 위하여 유전형질이 확인된 한우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제2항)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 및 연구·개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2	안 제26조(쇠소, 흑우 보호특구 지정)	국가는 한우의 품종내 아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쇠소,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집단에 대해서는 한우 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종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쇠소와 흑우 등에 대해서는 각각 보호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양호한 사육환경 확보와 개체수를 증대하기 위한 생산자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한우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학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인 시책 수립에 반영함(제3항)	
23	안 제27조(한우의 세계화)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한우의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제1항)	의무규정
24	안 제28조(한우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국가는 한우가 지닌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국립농업박물관 등 국가가 운영하는 역사 문화 관장 기관에 한우의 역사 문화 관련 전문인력, 전용공간 확보를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25	안 제29조(한우의 날)	한우산업의 진흥과 한우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한우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한우의 날(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로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	•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7조(연구·개발)	—	
3	안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	
4	안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	
5	안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	
6	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	
7	안 제16조(교육 지원)	—	
8	안 제17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	
9	안 제18조(부산물의 활용)	—	
10	안 제19조(소비촉진)	—	
11	안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	
12	안 제21조(도축·가공시설 지원)	—	
13	안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	
14	안 제23조(수출기반 조성)	—	
15	안 제25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	
16	안 제26조(취소, 흑우 보호특구 지정)	—	
17	안 제27조(한우의 세계화)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추계여부
18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미대상 — 한우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19	안 제15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 미대상 — 동 조항은 「축산법」 제32조와 동일한 조항으로, 「축산법」에 따른 재정소요 외에 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3]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요, [참고자료 4] 송아지 가격 동향 참고
20	안 제14조(경영개선자금 지원)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경영개선자금 지원 요건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의 수를 추산할 수 없으며, 해당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현시점에서는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1	안 제28조(한우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서는 한우 전문인력, 전용공간을 확보할 기관과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22	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	• 유사사례 참고 — 말산업 실태조사 사례
23	안 제8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24	안 제12조(도축·출하장려금)	○	• 유사사례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사례 참고
25	안 제29조(한우의날)	○	• 유사사례 참고 — 김치의날, 쌀의날, 흙의날 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축산법」 제3조1)에 따라 한우를 포함한 다양한 축종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가능하다는 의견 - 연도별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			
안 제7조(연구·개발)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축산현안 대응 기술 개발사업 * 모든 축종 대상 * 산출근거: 537.4백만원 ×7과제	10,579	5,670	3,76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자료 1]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 개요 참고				
안 제9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및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운영중이며 기본경비로 충당 가능			
안 제10조(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자연순환 농업활성화) * 모든 축종 * 5개소×1,750백만원×70%(융자 70)	4,900	6,125	6,125
공익기능증진직불 (저메탄사료) * 한육우 대상 * 9만 두 × 2.5만원/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정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11조(한우의 수급조절)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축산관측사업	323	323	3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3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 모든 축종	355,000	300,000	300,000
	* 산출근거: 6,000개소×50 백만원×100%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모든 축종	62,749	89,000	100,000
	* 산출근거: 31.3개소×4,0 00백만원×80%			
안 제16조(교육 지원)	사료구매자금			
	* 모든 축종	645,000	700,000	700,000
	(이차보전, 융자규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6조(교육 지원)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축산종사자교육사업	3,190	3,190	2,711
	* 모든 축종			
	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			
	* 한우자조금에서 수행중인 교 육·컨설팅 사업비 준용	1,956	1,339	814
안 제16조(교육 지원)	* 생산성전문교육, 역량강화 교육, 종합컨설팅, 사료컨 설팅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17조(소규모한우농가 지원)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 * 한우자조금에서 수행중인 교육·컨설팅 사업비 준용 * 생산성전문교육, 역량강화교육, 종합컨설팅, 사료컨설팅 등	1,956	1,339	814
	살처분보상금 * 한우, 육우, 젖소 등 모든 소 축종 * 산출근거 - 소 브루셀라병 20,160백만원 - 소 결핵병 11,520백만원 - 기립불능우 720백만원	48,528	32,400	32,400
	가축백신지원 * 한우, 육우, 젖소 등 모든 소 축종 * 산출근거 - 구제역 예방약 7,477백만원 - 소 접종 시술비 7,253백만원 - 스트레스 완화제 1,320백만원 - 구제역 채혈비 4,529백만원 - 렘피스킨 예방약 10,500백만원 - 소 접종 시술비 4,810백만원	39,414	31,051	35,8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8조(부산물의 활용)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 모든 축종	119,000	119,000	107,100
안 제19조(소비촉진)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한우가격 안정지원 * 한우자조금에서 수행중인 소비촉진사업비 준용 * 설·추석명절 등 소비촉진 행사 및 할인행사 등	23,182	17,586	15,1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0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단위: 백만원)			
안 제21조(도축·가공시설 지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	1,310	1,310	1,100
안 제22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 모든 축종	119,000	119,000	107,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5년)			
안 제23조(수출기반조성) 안 제27조(한우의 세계화)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한우수출지원 * 한우자조금에서 수행중인 한우 수출지원사업비 준용	2,422	3,072	1,6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5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안 제26조(젖소, 흑우 보호특구 지정)	(단위: 백만원)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가축개량지원 (국가중축개량지원 / 한우개량지원) * 산출근거 - 씨수소 개량 25,919백만원 - 한우육종농가 3,305백만원 - 한우암소검정 3,324백만원 - 가축개량교육 145백만원	31,417	31,891	32,693
	가축개량지원 (국가중축개량지원 / 중축등록사업지원) * 산출근거 - 종축능력평가대회 42백만원 - 한우선형심사비 140백 만원 - 토종가축인정 88백만원 - 등록장비 11.6백만원	245	240	282
	가축개량지원 * 산출근거 - 한우육종센터 씨수소 개 량 192백만원 - 우량암소수정란이식지 원 1,395백만원 - 한우고능력씨암소축군조성 160백만원 - 희소한우 개량지원 24백 만원	1,961	1,569	1,8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본 추계에서는 현재 관련 사업을 실시 중인 조항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안 제8조의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12조의 도축·출하장려금, 안 제29조의 한우의날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제정안은 한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계기간 중 첫해인 2026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가정
 - (도축·출하장려금) 도축장려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한시사업으로 수행한 도축수수료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매년 연 2회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출하장려금은 도축 시 육질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1) 1++등급 및 1+등급 판정 한우에 대해 출하장려금 지급
 - (시나리오2) 1++등급 판정 한우에 대해 출하장려금 지급
 - (한우의날) 김치의날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기념행사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추계 등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²⁾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10.)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0	2.0	2.0	2.0	2.0

(단위: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안 제6조)

-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비용은 유사사례인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
-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는 「말산업 육성법」 제6조³⁾ 및 하위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에서 수행 중
 -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주기: 매년
 - － 예산: 4억 5,000만원('22~'25년 매년)
 - － 조사대상 및 수록내용: 말자원 조사, 말사업 사업체 실태조사, 산업연관분석 등⁴⁾
- 제정안은 한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실태조사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 이때 한우산업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비용은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4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2억 5,000만원(연평균 4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450	450	450	450	450	2,250	4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8조)

- 추계기간 중 첫해인 2026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3) 「말산업 육성법」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4) 농림축산식품부, 「2023 말산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4. 2.

로 가정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연계솔루션 도입, 보안 솔루션 도입, 외부연계서버 도입, 관련프로그램 개발 등 구축 비용 소요

[표 4]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용(안)

(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시스템 구축	예상비용	세부내역
연계솔루션(S/W) 도입	8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시스템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솔루션(암호화, 모니터링 기능 등)
보안관련 솔루션 도입	50	• S/W: 10백만원 – 서버백신 2백만원, 시스템접근제어 8백만원 • H/W: 40백만원 – VPN 장치 20백만원, 서버보안(방화벽) 20백만원
외부연계서버(H/W) 도입	50	•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전용 전산서버 – CPU : Intel Xeon-Gold 6126 2.6Ghz 이상 – Memory : 288GB 이상 – HDD : 1.92TB SSD × 5개 이상 – S/W : 레드햇 리눅스, WAS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150	•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재료,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PM(총괄, 투입공수 3M/M) – 응용S/W개발자(투입공수 3.5M/M) – S/W아키텍트 인건비 (투입공수 0.5M/M)
합계	3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구축비의 15%⁵⁾로 가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2026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⁶⁾을 거쳐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5) 효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효율(10~15%)을 준용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4년 개정판)」, 2024.5. 173쪽)

6)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5.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 추계 결과,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억 900만원(연평균 1억 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스템 구축 비용	344	-	-	-	-	344	69
유지·관리 비용	-	-	54	55	56	165	33
합계	344	-	54	55	56	509	102

주: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시스템 구축 내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도축·출하장려금(안 제12조)

(1) 도축장려금

- 도축장려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한시사업으로 수행한 도축수수료⁷⁾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추계⁸⁾
- 2022년 추석 도축수수료 지원사업(한시)의 지원단가는 한우 암소 1두당 10만원이며 대상물량은 한우 4만 3천두
 - 사업목적: 추석 성수기 한우 출하를 촉진하여 공급 안정화 및 농가 부담 경감 등
 - 시기: 추석 성수기(2022.8.22.~9.8.)
 - 예산: 43억원(=43천두×10만원)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2회 명절(설, 추석) 성수기에 도축하는 한우 물량에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7) 최근 3년간 한우 도축수수료(도살처리수수료) 추이: 2021~2023년

(단위: 원/두)

구분	도매시장	농협공판장	민영도축장
2021	139,201	138,421	162,341
2022	158,953	151,867	168,173
2023	159,050	151,051	168,518

주: 연도별 암소, 수소, 거세우 도살처리수수료의 평균금액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자료

※ [참고자료 2] 주요 축종별 도축수수료 현황 참고

- 8)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한우협회는 2021~2022년 명절(설, 추석) 기간에 한시적으로 한우 암소 1마리당 10~15만원 범위에서 도축수수료 지원사업 실시(재원: 한우자조금, 축산발전기금)

- 이때 도축물량(43천두)과 도축수수료 지원단가(10만원/두)는 2022년 추석 성수기 지원 물량 및 지원단가를 적용하며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도축장려금 지급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30억원 (연평균 86억원)으로 추계됨

[표 6] 도축장려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급대상 물량(A, 두)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	-
지급단가(B, 천원/두)	100	100	100	100	100	-	-
지급횟수(C, 회)	2	2	2	2	2	-	-
합계 (D=A×B×C, 백만원)	8,600	8,600	8,600	8,600	8,600	43,000	8,6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출하장려금

- 출하장려금 지급대상 한우의 지급조건을 현시점에서는 구체화하기 어려우므로, 도축시 육질 등급판정⁹⁾ 결과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시나리오1) 1++등급 및 1+등급 판정 한우에 대해 출하장려금 지급
 - (시나리오2) 1++등급 판정 한우에 대해 출하장려금 지급
- (지급대상 물량) 출하장려금 지급대상 물량은 도축장려금 지급대상 물량 4만 3천두에 최근 3년간 육질 등급판정 한우 비율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
- 최근 3년(2022~2024년) 등급판정 한우¹⁰⁾ 평균 두수(929,657두) 대비 등급별 한우 평균 비율(출현율)의 평균값 적용
 - 1++등급: 평균 241,242두(25.9%)
 - 1+등급: 평균 233,147두(25.1%)

9)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4]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

1. 소 도체

(생 략)

가. 육량(고기량)등급: 도체의 중량, 등심 부위의 외부지방 등의 두께, 등심 부위 근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B·C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육질(고기질)등급: 근내지방도를 9단계로 측정하고,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1·2·3등급으로 판정한다.

10)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ekapepia.com)

[표 7] 최근 3년간 등급판정 한우 두수, 등급별(1+, 1++) 판정두수 및 비율: 2022~2024년
(단위: 두, %)

	2022	2023	2024	연평균
전체 등급판정 한우 두수(A, 두)	869,147	929,411	990,412	929,657
1++등급 두수(B, 두)	222,556	235,095	266,074	241,242
출현율(B/A, %)	25.6%	25.3%	26.9%	25.9%
1+등급 두수(C, 두)	219,947	230,079	249,414	233,147
출현율(C/A, %)	25.3%	24.8%	25.2%	25.1%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ekapepia.com)의 등급별 출현두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지급 횟수) 출하장려금은 도축장려금 지급과 동일하게 연 2회(설, 추석)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출하장려금 지급대상 두수는 매년 1++등급 22,274두, 1+등급 21,586두 규모로 추정

[표 8] 출하장려금 지급대상(등급별) 두수 전망: 2026~2030년

(단위: 두)

	2026	2027	2028	2029	2030
도축장려금 지원물량(A, 두)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지급횟수(B)	2	2	2	2	2
1++ 등급 출현율(C, %)	25.9%	25.9%	25.9%	25.9%	25.9%
1++ 판정 예상 두수(D=A×B×C)	22,274	22,274	22,274	22,274	22,274
1+ 등급 출현율(E, %)	25.1%	25.1%	25.1%	25.1%	25.1%
1+ 판정 예상 두수(F=A×B×E)	21,586	21,586	21,586	21,586	21,586
[시나리오 1] 1++ 및 1+등급 지급(G=D+F)	43,860	43,860	43,860	43,860	43,860
[시나리오 2] 1++등급만 지급(D)	22,274	22,274	22,274	22,274	22,274

주: 출하장려금 지급대상 물량은 도축장려금 대상 한우 두수(연 2회, 각 4만 3천마리)에 최근 3년간 등급별 출현율(1++등급 25.9%, 1+등급 25.1%)을 곱하여 추정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ekapepia.com)의 등급별 출현두수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지급 단가) 출하장려금 지급단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출하장려금 지급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1++등급 15만원/두, 1+등급 10만원/두으로 가정

- 출하장려금 지급사업: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육질 등급별 출하장려금(한우 1두당 8~30만원) 지급사례 참고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출하장려금 지급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9] 지방자치단체 한우 출하장려금 지급사례

(단위: 천원/두)

지자체	사업명	사업시기	지원대상	지급조건 (등급판정 등)		출하장려금 지급 단가
충북	청풍명월한우 브랜드출하 장려 금	2024	충북한우광역브랜드 청 풍명월 참여농가	혈통등록우		200
충남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2024	충남한우광역브랜드 토 바우 참여농가	토바우	1++	200
					1+	120
					1	80
경북	광역한우브랜드 활성화	2024	경북한우광역브랜드 참 품한우 참여농가	수도권 출하 (경기, 충남, 충북)		80
경남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2024	경남한우공동브랜드 한 우지에 출하농가	한우지에	1++	300
					1+	200
제주	고품질 축산물 우 수등급 장려금 지 원	2024	서귀포시 한우 출하농가	서귀포 출하	1++	40
					1+	20
강원 원주	고급육 출하 장려 금	2024	원주한우브랜드 치악산 참여농가	치악산	1++	1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홈페이지)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 결과, 출하장려금 지급 비용은 시나리오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다음과 같이 추계됨
 - (시나리오1) 1++ 및 1+등급 판정 한우에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년간 275억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2) 1++등급 판정 한우에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년간 167억 500만원으로 추계

[표 10] 출하장려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등급 판정	1++ 등급	지원물량 (A, 두)	22,274	22,274	22,274	22,274	22,274	－
		지원단가 (B, 천원/두)	150	150	150	150	150	－
		지원액 (C=A×B, 백만원)	3,341	3,341	3,341	3,341	3,341	16,705
	1+ 등급	지원물량 (D, 두)	21,586	21,586	21,586	21,586	21,586	－
		지원단가 (E, 천원/두)	100	100	100	100	100	－
		지원액 (F=D×E, 백만원)	2,159	2,159	2,159	2,159	2,159	10,795
[시나리오 1] 1++ 및 1+등급 지급 (G=C+F, 백만원)			5,500	5,500	5,500	5,500	5,500	27,500
[시나리오 2] 1++등급 지급 (H=C, 백만원)			3,341	3,341	3,341	3,341	3,341	16,705

주: 출하장려금 지급단가는 한우 1마리당 1++등급 15만원, 1+등급 10만원으로 가정

자료: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추석 한우 암소·돼지 출하수수료 지원사업 보도참고자료, 2022.8.23.
2.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ekapepia.com)

□ 한우의날 행사 및 홍보 등 실시(안 제29조)

-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한우의날 행사 및 홍보 등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억 1,500만원(연평균 1억 4,300만원)으로 추계됨
 - 김치의날 관련 예산 편성 사례(2025): 기념행사(1억원), 홍보(8,500만원) 등 1억 8,500만원

[표 11] 기념일 행사 및 홍보 관련 유사 사업 현황

현행 사업명	2023	2024	2025
전통발효식품육성 (김치의날)	185	185	185
쌀 소비기반 구축 (쌀의날)	200	200	200
친환경농자재지원 (흙의날)	50	45	45
평균	145	143	14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표 12] 한우의날 행사 및 홍보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한우의날 행사 및 홍보	143	143	143	143	143	715	1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한우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 한우의날 행사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5년간 총 739억 7,400만원(연평균 147억 9,500만원) 이상
: 1++ 및 1+등급 판정 한우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시나리오2) 5년간 총 631억 7,900만원(연평균 126억 3,600만원) 이상
: 1++등급 판정 한우에 대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표 1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안 제6조)		450	450	450	450	450	2,250	450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8조)		344	—	54	55	56	509	102
도축·출하 장 려금 (안 제12조)	도축장려금	8,600	8,600	8,600	8,600	8,600	43,000	8,600
	[시나리오 1] 출하장려금 (1++ 및 1+ 등급 지급)	5,500	5,500	5,500	5,500	5,500	27,500	5,500
	[시나리오 2] 출하장려금 (1++ 등급 지 급)	3,341	3,341	3,341	3,341	3,341	16,705	3,341
한우의날 행사 및 홍보 (안 제29조)		143	143	143	143	143	715	143
추가재정소요	[시나리오 1]	15,037	14,693	14,747	14,748	14,749	73,974	14,795
	[시나리오 2]	12,878	12,534	12,588	12,589	12,590	63,179	12,636

주: 1) 도축장려금 지급단가는 한우 1마리당 10만원으로 가정(연간 명절 2회, 4만 3천두 물량)

2) 출하장려금 지급단가는 한우 1마리당 1++등급 15만원, 1+등급 10만원으로 가정

자료: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ekapepia.com)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2025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축산 분야 현안문제 해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의 대응 기반 구축
- 사업기간: '21~'25(5년)
- 지원조건: 출연 100%(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 사업시행주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실집행 주체: 기업, 영농조합법인, 대학, 연구소 등
- 사업추진 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관련 예산

<축산 관련 기술 연구·개발·보급 예산: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2	2023	2024	2025
2025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R&D)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종별 사료(첨가제 등), 수입 사료원료 대체 및 고품질 사양관리 소재 등 연구개발 지원	4,734	3,913	1,332	432
	축산시설 환경개선	시설자재 국산화 및 맞춤형 자재 개발, 한국형 축산에너지 절감모델, 축산 환경 개선(자원화, 악취) 등 연구개발 지원	6,736	6,666	4,338	3,330

[참고자료 2] 주요 축종별 도축수수료 현황

(축산물품질평가원 제출자료)

□ 최근 4년간 평균 도축수수료(도살처리수수료)

축종	구분		도매시장	농협공판장	민영도축장
소(한우)	2020년	암	140,193	136,748	157,321
		수	144,332	130,082	157,005
		거세	140,193	136,748	158,251
		평균	141,573	134,526	157,526
	2021년	암	139,201	138,421	162,874
		수	139,201	138,421	161,926
		거세	139,201	138,421	162,222
		평균	139,201	138,421	162,341
	2022년	암	161,620	154,667	170,070
		수	157,620	149,600	166,223
		거세	157,620	151,333	168,227
		평균	158,953	151,867	168,173
	2023년	암	159,050	152,185	168,386
		수	159,050	148,783	168,234
		거세	159,050	152,185	168,933
		평균	159,050	151,051	168,518
돼지	2020년	평균	18,653	19,980	17,733
	2021년	평균	18,584	20,434	17,630
	2022년	평균	19,225	19,562	19,057
	2023년	평균	22,900	19,956	19,055
축종	구분		계열업체		
닭(육계, 도계비)	2020년	평균	308		
	2021년	평균	308		
	2022년	평균	304		
	2023년	평균	326		

주: 닭은 계열업체 운영 도계장을 기준으로 도계비 산출

[참고자료 3]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도입배경

- '90년대 중후반 무역개방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한우사육 규모가 급감**
함에 따라 한우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동 제도 도입('98)

* '95년 WTO 출범, '97년 IMF 사태, '01년 소고기 수입 개방

** 한육우 사육규모: ('96) 284만 마리 → ('01) 141만 마리 (한우는 '03년 이후 구분 가능)

< 법적 근거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생산·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 사업개요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발동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보전금) 동 제도에 가입한 농가에게 지급(20~30만원 내외)

* 발동 기준가격은 '11년까지 경영비 이상 수준에서 책정(자가노동비 등 반영)

< '00~'08년 기준가격 현황 및 책정 사례 >

(단위: 천원)

구분	'00	'01	'04	'06	'07	'08
기준가격	900	1,200	1,260	1,300	1,550	1,650
경영비	791	787	1,006	1,079	1,171	1,527
생산비	1,401	1,443	1,945	2,079	2,142	2,467

※ '07년(1,550천원): '06년 경영비(1,079) + '06년 자가노동비(384) + 물가상승률(2.4%) + 농가불안심리 감안(52)

※ '08년(1,650천원): '07년 기준가격+물가상승률(3.3%)+농가불안심리 감안(50)

□ 현행 발동기준('12년 조정)

- (발동기준) 기준가격(송아지 거래가격) 185만원 이하 및 가임암소 110만마리 미만
- (보전금액) 발동시 가임암소 마릿수*에 따라 마리당 10~40만원 지원
※ 기준가격 이하 하락시기의 직전년도말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

가임암소(만마리)	90미만	90~100미만	100~110미만
보전금(만원/마리)	40	30	10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현황

- '08~'12년간 총 일곱 차례 발동되었으며, 송아지 85만마리를 대상으로 1,655억원 지급

구분	'08		'09	'11		'12		합계
	3분기	4분기	1기 (1~2월)	5기 (9~10월)	6기 (11~12월)	1기 (1~2월)	2기 (3~4월)	
지급대상(만마리)	22	15	7	16	11	7	8	85
지급액(억원)	381	297	95	156	329	206	191	1,655
지급단가 (만원/마리)	17.5	20.0	13.9	9.7	30.0	30.0	25.4	19.5 ^{평균}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발동 시 수급상황

- 한우 개체수(1세미만·가임암소·전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축 증가로 도매가격이 약세였던 시기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발동

※ 가임암소: ('03) 605천마리 → ('08) 1,013('03년 대비 67.4% ↑) /

('08) 1,013천마리 → ('12) 1,227('08년 대비 21.1% ↑)

※ 1세미만: ('03) 427천마리 → ('08) 712('03년 대비 66.7% ↑) /

('08) 712천마리 → ('12) 877('08년 대비 23.2%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및 적립금 현황

- '24년말 현재 8천호가 동 사업에 가입, 총 155억원 적립

※ 농가가 동 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임암소를 등록시키고 2만원을 지역 농축협에 납부(50% 지자체 지원)해야 함

구분	'01	'05	'10	'15	'20	'21	'22	'23	'24
가입호수(천호)	123	114	127	46	18	16	13	10	8
가입암소수(천마리)	383	619	1,007	376	135	117	92	65	49
적립금(억원)	118	330	365	95	134	138	142	144	155

[참고자료 4] 송아지 가격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시기별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

- 농협경제지주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 여부 판단을 위해 생산하는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전체 평균 거래가격
 - (1기) 1~2월, (2기) 3~4월, (3기) 5~6월, (4기) 7~8월, (5기) 9~10월, (6기) 11~12월

(단위: 천원)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12	1,236	1,395	1,580	1,388	1,319	1,210
'13	1,330	1,357	1,422	1,457	1,604	1,679
'14	1,890	1,907	2,135	2,336	2,265	2,071
'15	2,076	2,324	2,620	2,926	3,041	2,823
'16	2,957	3,250	3,585	3,521	3,286	2,818
'17	2,828	3,136	3,453	3,406	3,410	3,218
'18	3,250	3,486	3,667	3,545	3,615	3,402
'19	3,378	3,456	3,729	3,639	3,625	3,587
'20	3,572	3,772	3,979	4,013	3,956	3,862
'21	3,830	4,068	4,360	4,276	4,241	3,857
'22	3,309	3,320	3,631	3,539	3,412	2,700
'23	2,402	2,831	2,812	2,908	3,109	3,031
'24	2,915	2,871	2,893	2,960	3,135	3,080
'25	3,086					